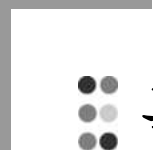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 관련 해설서

2026. 10. 1.



목차

1. 개요	1
2.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2
3. 금지되는 시험 또는 평가	5
4. 허용되는 진단 행위를 위한 보호자 동의	8
5. 허용되는 진단 행위 방식	10
6. 체크리스트	12
7. Q&A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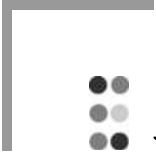


표 목차

<표 1> 관찰의 예시	3
<표 2> 면담의 예시	4
<표 3> 진단 행위 실시 이전 보호자 안내사항 예시	8
<표 4> 진단 행위 결과 보고 방식 예시	11
<표 5>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비교·서열화 방식 예시	11
<표 6> 금지 행위 체크리스트	12
<표 7> 허용되는 진단 행위 충족 요건 체크리스트	12

1. 개요

가. 목적

-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시행('26.10.1.)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등) 신설에 따라 유아 대상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모집, 분반 목적의 시험 및 평가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안내하여 일선기관의 운영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유아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유아 발달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나. 단속 대상 및 시행일

□ 단속 대상

-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유아는 만 3세 이상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의미

□ 시행 및 단속 개시일: 2026년 10월 1일

□ 핵심 단속 내용

- 모집, 선발,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유아에게 시행하는 시험 또는 평가 행위

다. 종합 가이드라인

학원법 제12조의2 및 시행령 개정안 반영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및 허용되는 **진단 행위** 가이드라인

대상: 유아 (만3세 ~ 취학 전 아동)

1 등록 전 (신입생 모집 단계)

▲ 핵심 판단 목적

모집 및 수준별 배정 목적

✕

시험 및 평가 전면 금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모두 적용

⊘ 금지되는 행위 예시

- 필기·구술·실기·면접 방식의 시험 또는 평가
-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한 시험의 결과, 경력에 관한 자료 등 활용
- 유아의 특정 능력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 또는 평가

▲ 위반 시 1차 100만 / 2차 200만 / 3차 300만원 과태료 부과

2 등록 후 (신입생 등록 완료/재원생)

● 핵심 판단 목적

교육활동 지원 목적 (적정 반 배정 등)

○ 허용되는 진단 행위의 기준

- 절차: 보호자 사전 동의 필수
 - 진단 행위의 목적, 방식,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 내용 등을 안내
 - 보호자 사전 동의는 반드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
- 진단 방식: 관찰, 면담 방식
 - 교습행위 과정 중 자연스러운 관찰, 면담 방식으로 실시
- 결과 보고: 서술식
 - 진단의 결과는 유아 개인의 학습진행 상황, 학습지원 필요사항 등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제공
 - 점수, 순위, 합격·불합격 등으로 표시 금지
- 결과 활용: 개인 맞춤형 교육을 위한 적정 반 배정 가능

2.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가. 조문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①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해설

□ 원칙: 유아 대상 모집 및 분반 시험(레벨테스트)의 법률상 금지

- 학원 등록 전 모집 단계에서 아동 선별과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 평가를 치르게 하는 행위는 법률에 의해 금지됨
- 유아의 학원 입학시험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 사교육 시장의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을 차단하기 위함

□ 예외: 등록 후 '교육활동 지원 목적'의 진단 행위 허용

- 허용되는 진단 행위의 목적은 유아의 학습 진행 상황과 학습지원 필요사항을 파악하여 안정적인 교육활동과 환경을 제공하는 방향이어야 함
- 유아가 이미 학원, 교습소에 등록을 완료한 상태에서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허용되는 방식으로 진단 행위를 할 때 예외가 인정됨
- 허용되는 진단 행위의 조건
 - ① 시점: 반드시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을 마친 이후
 - ② 절차: 진단 행위 실시 전, 보호자의 사전 동의 필수
 - ③ 방식: 유아 행동을 자연스럽게 살피는 '관찰'과 대화를 통한 '면담' 방식
- 허용되는 진단 행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교육을 위해 적정 반에 배정하는 것은 가능

□ 등록의 기준

- 등록이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의미
 - ① 신청: 학부모가 학원에 입학원서를 제출
 - ② 접수: 학원의 접수 및 수강과정, 입학 예정일, 수강 자리의 확정
 - ③ 결제: 교습과정 교습비 사전 납부

□ 교육활동 지원의 범위

－ ‘유아의 교육활동 지원’은 유아가 학원 환경과 교육 과정에 건강하게 적응하고, 개별 발달 수준에 맞는 적절한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행위를 의미

－ 교육활동 지원의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음

- ① 걱정 반 배정*
- ② 흥미, 적성, 발달 특성 파악
- ③ 학습 진행상황 파악
- ④ 학습지원 필요사항 파악
- ⑤ 개별 맞춤형 교육

* 걱정 반 배정의 의미: 점수, 순위, 합격·불합격 등 비교·서열화하지 않고, 허용되는 진단 행위의 서술형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적합한 반을 배정 또는 조정하는 것을 의미

□ 허용되는 진단 행위 방식

－ 교습행위 과정 중 유아에 대한 관찰과 면담 방식 가능

※ 교습행위 범위: 놀이, 활동, 수업, 오리엔테이션 등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 포함

－ 유아가 진단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수업, 놀이 활동 중 자연스럽게 관찰하거나, 수업 외 원내 휴식 시간을 활용하여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 가능

- ① 관찰: 유아가 다양한 교습행위와 놀이 및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강사가 유아의 상호작용 방식, 교구 활용 방식, 참여 태도 등을 자연스럽게 지켜보며 기록하는 방식

<표 1> 관찰의 예시

구분	주요 관찰 내용 예시
참여도	－ 교사의 안내나 질문에 반응하고 참여하는 정도 －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
흥미	－ 특정 활동과 자료에 관심을 보이고 탐색하는 방식 － 다양한 놀잇감을 활용하여 놀이를 확장하는 정도
상호작용	－ 교사의 질문에 대한 말, 표정, 몸짓 등의 반응 － 또래와 의사소통하고 협력하여 활동하는 방식
정서 반응·적응	－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 하는 방식 － 새로운 활동이나 수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정도
이해력	－ 학습 내용이나 질문을 이해하는 정도 － 활동의 규칙이나 시범에 따라 수행하는 정도
사고력	－ 사물 및 상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류하는 정도 － 규칙을 발견하거나 해결방법을 시도하는 정도

※ 본 예시는 참고용이며, 유아의 특성과 학원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적용 가능

② 면담: 수업 외 원내에 머무르는 시간을 활용하여 자유롭고 편안한 대화를 통해 유아의 표현력, 이해도, 수행 수준, 발달 특성 등을 자연스럽게 파악하는 방식

<표 2> 면담의 예시

구분	개방형 면담 질문 예시
참여도	- 오늘 어떤 활동을 했어? - 그 활동에서 무엇을 해봤어?
흥미	- 오늘 활동 중 어떤 것이 가장 재미있었어? - 어떤 부분을 더 해보고 싶어?
상호작용	-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선생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어? - 친구와 함께할 때 어떤 점이 재미있었어?
정서 반응·적응	- 오늘 활동하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어? - 어려운 점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했어?
이해력	- 이 책의 이 장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 - 그림 속 친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사고력	-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 - 다른 방법으로 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 본 예시는 참고용이며, 유아의 특성과 학원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적용 가능

3. 금지되는 시험 또는 평가

가. 조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금지되는 시험 또는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시험 또는 평가로 한다.
1. 필기·구술·실기·면접 등의 방식에 의한 시험 또는 평가
2.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한 시험의 결과, 경력에 관한 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
3. 그 밖에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 또는 평가

나. 해설

□ 원칙

-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여서는 안 됨
- 단, 유아의 등록 이후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결과를 반 배정에 활용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가능함
- 이는 모집 또는 수준별 배정 목적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재원생 대상의 일반적인 학습 성취도 확인 활동까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님

□ 적용 기준

- 실시 시점(등록 전후)과 관계없이 시험, 평가의 목적이 유아의 선발이나 분반에 있다면 법령상 금지임
- 즉, 학원 등록 이후라 하더라도 제1호, 제2호, 제3호의 방법으로 실시한 시험, 평가를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활용하면 아니 됨

□ 금지되는 시험 또는 평가 방식

1) 필기, 구술, 실기, 면접의 방식

- ① 필기시험/평가: 유아에게 시험지나 태블릿 등으로 문제를 제시하고, 답안을 글로 쓰거나 표시하게 하여 능력을 평가하는 행위

【 필기시험/평가 예시 】

- 알파벳 쓰기, 한글/영어단어 쓰기, 그림에 맞는 단어 연결하기
- 덧셈, 뺄셈 문제 풀이, 도형, 규칙 찾기
- 객관식 시험, 워크북/문제지 풀이 등

※ 본 예시는 참고용이며, 유아의 특성과 학원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적용 가능

- ② 구술시험/평가: 유아에게 말로 응답하도록 하여, 미리 정한 질문과 채점 기준에 따라 응답의 정답 여부를 판정하고 능력을 평가하는 행위

【 구술시험/평가 예시 】

- 영어 단어 또는 그림 보여주고 단어 뜻 말하게 하기
- 사칙연산 문제를 듣고 암산하여 답을 말하게 하기

※ 본 예시는 참고용이며, 유아의 특성과 학원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적용 가능

- ③ 실기시험/평가: 유아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미리 정한 행동이나 과제를 직접 수행하게 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 과정이나 결과를 평가하는 행위

【 실기시험/평가 예시 】

- 정해진 규칙이나 조건에 따른 문제 해결 과제 수행하기
- 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프레젠테이션 하기

※ 본 예시는 참고용이며, 유아의 특성과 학원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적용 가능

- ④ 면접시험/평가: 유아의 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정한 질문이나 과제 등을 제시하고, 그 응답 결과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행위

【 면접시험/평가 예시 】

- 각 유아에게 구조화된 동일한 질문과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유아 간 차이를 비교·평가하기
- 시간을 제한하거나 긴장감을 조성하는 질의응답을 통해 유아의 능력을 파악하기

※ 본 예시는 참고용이며, 유아의 특성과 학원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적용 가능

2)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한 시험의 결과, 경력에 관한 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

- 유아 대상으로 직접 시험과 평가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외부 평가 자료나 타 기관의 학습 이력 등을 활용하여 유아의 학습, 수행 능력을 확인하고 이를 모집이나 반 배정에 이용하는 경우를 의미

【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한 시험의 결과, 경력에 관한 자료 활용 예시 】

- 외부 인증시험 혹은 검사 결과 (예: 유아 인지·지능 검사, 언어평가 결과, SR, AR 등)
- 이전 학원의 테스트 결과지, 성적표
- 이전 학원의 수료증, 이수증 정보
- 유아의 포트폴리오

※ 본 예시는 참고용이며, 유아의 특성과 학원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적용 가능

3) 그 밖에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 또는 평가

- 제1호, 제2호와 유사한 방식으로 유아의 선발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유아의 능력을 점수화, 서열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항목으로서, 아래와 같은 사례들이 해당될 수 있음

① 보호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워크북/학습지/숙제를 하게하고 그 결과를 학원에 제출하게 하는 행위
: 평가의 장소가 학원에서 가정으로 바뀐 형태일 뿐, 유아에게 직접 문제를 풀게 하고 그 결과로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인 제1호의 필기시험/평가에 해당하므로 법령에 의해 금지됨

② 보호자에게 유아의 과제 수행, 실기 관련 영상을 촬영하여 학원에 제출하게 하는 행위
: 평가의 장소가 학원에서 가정으로 바뀐 형태일 뿐, 유아에게 특정 행동이나 과제 등을 직접 수행하게 하는 방식인 제1호의 실기시험/평가에 해당하므로 법령에 의해 금지됨

③ 앱, 게임, 태블릿 등을 활용한 퀴즈, 게임 결과를 활용하는 행위
: 매체와 무관하게 유아가 직접 퀴즈를 풀거나, 게임을 수행하면서 문제 풀이의 결과로 유아의 능력을 평가하는 행위는 제1호의 필기시험/평가에 해당하므로 법령에 의해 금지됨

4. 허용되는 진단 행위를 위한 보호자 동의

가. 조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등)
②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진단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해당 진단 행위의 목적, 방식,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 내용 등을 안내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해설

☐ 목적

- 학원, 교습소, 개인교습자가 아동을 대상으로 허용되는 진단 행위를 실시하기 전, 보호자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명확한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는 것임
-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모의 명확한 의사 확인을 통해 학원의 임의적이고 일방적인 평가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선행 조건

-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 시점은 학원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임
- ※ 보호자로부터 등록과 동시에 동의서를 확보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음

☐ 안내 사항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진단 행위 실시 전, 보호자에게 다음 사항을 안내함

<표 3> 진단 행위 실시 이전 보호자 안내사항 예시

구분	내용
진단의 목적	- 교육활동 지원 목적임을 명시 (예: 학습 진행 상황, 학습지원 필요사항 확인, 맞춤형 교육, 적정 반 배정 등)
방식	- 놀이, 활동 참여, 교습 행위 과정 중 자연스러운 관찰, 유아와의 면담을 통해 진행됨을 명시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 내용	- 향후 유아의 교육활동 지원 및 지도 계획 수립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명시

※ 본 예시는 참고용이며, 유아의 특성과 학원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적용 가능

□ 동의 방식

- 동의에 대한 증빙을 위해 반드시 서면(종이 동의서) 또는 전자적 방법(문자 URL, 학원 앱 동의 기능, 전자 서명 등) 인정
- 구두나 묵시적 동의는 인정되지 않음
- 학원, 교습소, 개인교습자는 보호자 동의서를 진단행위를 실시한 날로부터 최소 1년 이상 보관 권고

[서식 예]

제 호		
보호자 동의서		
유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	학원명(교습자명, 개인과외교습자명)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	
보호자	성명 (전화번호 :)	
	주소 (상세주소 아님. 구·동까지만 기재, 주소 작성 시 괄호 삭제)	
	유아와의 관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진단 행위를 실시하기 위해 보호자에게 진단 행위의 목적, 방식,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 내용 등을 사전에 설명하였고, 보호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성명 _____(서명)		

5. 허용되는 진단 행위 방식

가. 조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등)

③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진단 행위는 교습행위의 과정 중에 실시하고, 그 결과는 유아 개인의 학습 진행상황, 학습지원 필요사항 등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하되, 점수, 순위, 합격·불합격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나. 해설

□ 정의

- 진단 행위: 학원, 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교습을 시작한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유아의 발달 특성, 흥미 등을 파악하는 행위를 의미
- 교습행위: 수업, 놀이, 활동, 오리엔테이션 등 학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의미

□ 진단 행위 실시 방식

- 유아의 교습행위 참여 과정 중 관찰, 면담을 시행
- 인위적인 평가 환경이 아닌,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진단 시행
- 진단 행위 시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일상적인 교육활동 과정에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 등록이 완료된 유아 대상으로 정규과정 개강 전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 적응수업, 적응교육 등은 정규과정과 연계된 연속적인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운영하며,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관찰·면담은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습행위로 인정
- 다만, 해당 관찰·면담 결과를 근거로 입학을 거절하는 것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불가능

※ 구체적인 관찰·면담 내용은 pp.3~4 참조

□ 진단 행위 결과 보고 방식

- 유아의 진단 결과는 유아 간 능력을 비교하거나 서열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유아의 발달 특성과 흥미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유아 개인의 학습 진행 상황, 학습지원 필요사항 등을 정성적, 서술형으로 기록하는 방식이어야 함

<표 4> 진단 행위 결과 보고 방식 예시

구분	서술형 기술 예시
참여도	- 주어진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집중을 지속하는 편임 - 교습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끝까지 참여함 - 새로운 활동을 시작할 때 다소 시간이 필요한 편이나, 익숙해지면 조금씩 참여하는 경향을 보임
흥미	- 새로운 활동이나 자료에 호기심과 관심을 보임 - 흥미 있는 활동에는 먼저 참여하며 반복하려 함 - 관심이 낮은 활동에서는 집중력과 참여 지속력이 다소 짧은 편임
상호작용	- 교사의 질문과 설명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함 - 또래와 생각을 나누며 어울려 활동함 - 먼저 상호작용을 시작하기보다는 교사의 격려가 있을 때 상호작용하는 편임
정서 반응·적응	-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편임 - 새로운 활동이나 환경의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적응함 - 예상하지 못한 변화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교사의 지원이 필요한 편임
이해력	- 질문이나 설명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반응함 - 활동의 규칙과 방법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수행함 - 일부 활동은 교사의 시범이나 반복 설명이 제공되면 이해하는 편임
사고력	- 주어진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함 - 문제 상황에서 해결 방법을 주도적으로 찾아 시도함 - 익숙하지 않은 문제는 교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법을 찾는 편임

※ 본 예시는 참고용이며, 유아의 특성과 학원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적용 가능

-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관찰면담 진단 결과는 유아 개인의 학습 진행상황과 학습지원 필요사항을 서술형으로 기록하고, 점수, 순위, 합격·불합격 등으로 표시하여서는 안 됨

<표 5>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비교·서열화 방식 예시

구분	비교·서열화 방식 예시
점수	- 100점 만점에 80점 - 10문항 중 8개 정답 - Reading 3점, Speaking 4점, Writing 2점
순위	- 15명 중 2등 - 상위 5% - 백분위 90%
합격·불합격	- 합격, 불합격 - 통과, 미통과

※ 본 예시는 참고용이며, 유아의 특성과 학원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적용 가능

□ 진단 행위 결과의 활용

- 허용된 진단 행위의 서술형 결과를 유아 개인 맞춤형 교육을 위해 반 배정에 활용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가능

6. 체크리스트

가. 금지 행위 체크리스트

- ☐ 아래 체크리스트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위반 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기준으로,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위반으로 간주함

<표 6> 금지 행위 체크리스트

구분	확인 사항	체크
금지되는 시험/평가 시기	수강 등록 전에 시험 또는 평가가 이루어지는가?	
금지되는 시험/평가 목적	유아의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가?	
금지되는 시험/평가 방식 (유아의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 목적인 시험/평가만 금지)	아래 방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는가? ① 필기, 구술, 실기, 면접 방식의 시험 또는 평가 ②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한 시험의 결과, 경력에 관한 자료 등 활용 ③ 유아의 특정 능력을 서열화하는 시험 또는 평가	

나. 허용되는 진단 행위 충족 요건 체크리스트

- ☐ 아래 체크리스트는 허용되는 진단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표 7> 허용되는 진단 행위 충족 요건 체크리스트

구분	확인 사항	체크
등록 여부	허용되는 진단 행위 실시 전에 학원 등에 등록하였는가? ① 신청: 학부모가 학원에 입학원서를 제출 ② 접수: 학원의 접수 및 수강과정, 입학 예정일, 수강 자리의 확정 ③ 결제: 교습과정 교습비 사전 납부 완료	
부모 사전 동의	허용되는 진단 행위 실시 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는가? ① 안내 내용: 진단행위의 목적, 방식,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 내용 등을 안내 ②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기록 확인	
진단 행위 방식	허용되는 진단 행위가 실제 교습행위 과정 중 관찰·면담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진단 행위 결과 보고	허용되는 진단 행위의 결과를 점수, 순위, 합격·불합격 등으로 비교·서열화하지 않고, 개인별 학습 진행상황, 학습지원 필요사항 등 교육지원 목적 중심으로 서술하였는가?	

7. Q&A

Q1. 초등반 입학 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 1, 2월에 레벨테스트를 볼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 초등학교 입학 전인 1월과 2월의 아동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유아(만 3세 이상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 금지됩니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라 하더라도 정식 입학(「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3월 1일) 전에는 레벨테스트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Q2. 신입생 상담 과정에서 별도의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이전 학습기관의 학습 결과물(예: writing 자료, 기존 성적표 등)을 확인하여 적합한 반을 안내하거나 배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보호자에게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된 시험의 결과, 경력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학원, 교습소 등록 전이나 개인과외교습 시작 전에 이전 학습기관의 학습 결과물(외부 인증 시험, 검사 결과, 이전 학원의 테스트 결과지, 성적표, 수료증, 이수증, 포트폴리오 등)을 활용하여 수준별 반 배정을 하는 행위는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지됩니다.

Q3. 등록 전 보호자 상담 과정에서 유아가 직접 문제를 풀지 않고, 보호자가 평소 모습을 바탕으로 응답하는 설문 방식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 유아에게 직접 평가를 하지 않고, 보호자가 평소 유아의 모습을 바탕으로 응답하는 설문 방식은 허용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질문은 보호자 상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보호자 상담 내용 예시 】

- ① 흥미 및 선호도: 좋아하는 책, 노래, 놀이, 활동 등 관심사, 몰입도, 집중력
- ② 의사소통 및 표현 특성: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 표정, 몸짓 등으로 표현하는 방식, 의사소통 특성
- ③ 사회성 및 상호작용 특성: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 방식, 함께 놀이하고 협력하는 방식
- ④ 적응 특성: 새로운 환경에 대한 반응, 변화에 대한 적응 양상
- ⑤ 영어, 수학 활동 참여 특성: 영어, 수학에 대한 관심, 영어, 수학 활동 참여 태도와 자신감

- 좋아하는 책을 반복해서 읽어 달라고 하나요?
- 글자를 보고 읽을 수 있나요?
- 단어의 첫 소리를 듣고 어떤 알파벳인지 맞힐 수 있나요?
- 알파벳 이름을 들었을 때, 그 글자를 알아보고 고를 수 있나요?
- 장난감이나 물건을 줄 세울 때, 특정 규칙(색깔, 모양, 크기 등)을 정해서 나열할 수 있나요?

- 단, 보호자 상담 설문 내용에 유아의 외부 시험 성적표, 타 기관 이수증 등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이전 학원의 학습 경력을 수집하는 질문을 포함하는 것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 또한, 상담 시 활용되는 질문 내용을 가정 내 과제로 부여하여 유아가 직접 수행한 결과물을 제출받는 방식은 제한됩니다. 이는 평가의 장소만 학원에서 가정으로 바뀐 것일 뿐, 유아에게 직접 문제를 풀게 하여 유아의 특정 능력을 평가하는 행위와 다르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받는 규제 대상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4. 보호자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점수를 매기지 않고 학습 교재 및 제품군을 추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를 통한 반 배정도 가능한가요?

A. 모두 가능합니다.

- 보호자 상담을 통해 유아의 흥미나 성향에 적합한 학습 교재나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것은 교육 지원을 위한 일반적인 상담 및 안내 행위로 허용됩니다.
- 법령에서 금지하는 핵심은 유아를 대상으로 직접 시험 또는 평가(레벨테스트)를 실시하거나,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된 시험 결과 또는 경력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모집 및 수준별 반 배정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아에게 직접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보호자 상담을 바탕으로 적합한 교재나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반을 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5. 학원, 교습소 등록 완료 후 또는 개인과외교습 시작 후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실제 교습 과정에서의 수업 관찰이나 유아와의 면담을 통해 유아의 학습 상태를 진단하고 이를 적정 반 배정에 활용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 등록 후 보호자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관찰과 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허용되며, 유아의 적응을 돕기 위해 적정 반 배정에 정성적, 서술형 기술 방식으로 정리한 결과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6. 현재 학원에 재원 중인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지원 및 학습 결과 확인 목적의 학습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 유아의 모집이나 수준별 반 편성을 위한 목적이 아닌, 재원생 개인의 학습 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2026년 하반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유해교습행위 금지) 예정에 따라 비교·서열화하는 행위가 법령에 의해 금지될 예정입니다.
- 따라서 보호자에게 성취도 평가 결과를 비교·서열화 하는 방식으로 안내하는 것은 지양하고, 유아 개인의 학습 진행 상황, 학습지원 필요사항 등을 서술형으로 제공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Q7. 재원생 대상 성취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 리포트를 작성하여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학습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 학습 리포트에 타 아동과의 비교·서열화 안내는 지양하고, 개별 유아의 성취 수준과 학습 특성을 중심으로 한 서술형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Q8. 재원생 대상 성취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준별 배정을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 학습 성취도 평가 결과를 수준별 반 배정에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유아 개인 맞춤 교육을 위해 반 배정이 필요할 때는 성취도 평가 결과가 아닌, 허용되는 진단 행위(관찰·면담)를 통해 수집된 결과를 이용해주십시오.
- 즉, 교습행위 과정 중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관찰과 면담 형태의 진단 행위의 결과를 점수가 아닌 서술형으로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반 배정 및 맞춤형 학습 지도에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